

BK21 플러스 사업단 인센티브 지급규정

(사업단명: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창의적 기반기술 연구인력 양성팀)

제정 2016년 5월 3일

본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 말에 실시하는 참여인력의 연구업적 평가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참여교수 연구업적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인정기간은 평가대상연도의 1년간(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단, 대학원생 배출실적은 평가대상 직전연도 2월과 평가대상연도 8월의 배출실적을 평가한다)

- 대학원생 확보 실적
- 대학원생 배출 실적
-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SCI(E) 논문의 환산 IF
-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 대학원 과목 외국어 강의 비율
- 지도학생 학위논문 영어작성 비율
-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 국제 공동 연구 실적
- 연구비
- 참여교수 SCI(E) 논문의 환산 IF
-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 기타 연구 기여도(사업단장 평가)

연구업적 평가 및 증빙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식자료에 기반을 둔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업적에 대하여 사업단장이 연구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제 2 조 참여교수 연구업적 별 인정 기준

1. “대학원생 확보 실적”은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2. “대학원생 배출 실적”은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SCI(E) 논문의 환산 IF합”은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4.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5. “지도학생 영어작성 학위논문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6.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교수의 Program committee member, 수상실적, 기초 강연 횟수로 평가한다.

7. “국제 공동 연구 실적수”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교수의 국제 공동 연구 실적 및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실적으로 평가한다.

8.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수”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교수의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수로 평가한다.

9.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은 서강대학교와 계약을 한 정부기관 연구비를 대상으로 하며 서강대학교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참여교수 SCI(E) 논문의 환산 IF합”은 “국제저명학술지(SCI(E))” 논문을 대상으로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구재단 SCI 인정 학회 논문은 SCI급 논문으로 간주한다

11.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는 서강대학교를 통하여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 환산 건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BK21 플러스 사업의 국가별 가중치를 반영한다.

12.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은 서강대학교를 통하여 산출한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액, 특허 이외 산업재산권 관련 기술료 수입액, 지적 재산권 관련 기술료 수입액, Know-how 관련 기술료 수입액을 대상으로 한다.

13. “참여교수 1인당 산업체 및 해외 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은 서강대학교와 계약을 한 산업체 및 해외기관 연구비를 대상으로 하며 서강대학교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체 대비 해외기관 연구비에 2배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4. “기타 연구 기여도(사업단장 평가)”는 학술등재지 게재 실적 및 기타 참여도 등을 기반으로 사업단장이 정성적으로 평가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상세한 평가 기준은 사업단장이 참여 교수들에게 알린다.

제 3 조 참여교수 연구업적 산정 비율

BK21 플러스 사업 평가기준에 의거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절대점수 (BKP 기준)	정규화 점수(%)
대학원생 확보 실적(연구실별 학기당 재학생수 평균)	14	7.9
대학원생 배출 실적 (연구실별 졸업생수로 평가)	28	15.8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IF합 (단, 연구재단 SCI 인정 학회 논문은 SCI급 논문으로 간주)	20	11.3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환산 편수 (단, 연구재단 SCI 인정 학회 논문은 SCI급 논문으로 간주)	5	2.8
지도학생 영어작성 학위논문수	8	4.5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Program committee member, 수상실적, 기초강연 횟수로 평가 (국제학회만 반영))	7	4.0
국제 공동 연구 실적수	4	2.3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수	3	1.7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10	5.6
교수별 IF합 (단, 연구재단 SCI 인정 학회 논문은 SCI급 논문으로 간주)	36	20.3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국가별 국제특허 가중치 적용)	7	4.0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9	5.1
참여교수 1인당 산업체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10	5.6
기타 연구 기여도 (사업단장 평가)	16	9.0
총합	177	100

제 4조 참여교수 연구업적 별 점수 및 총점 산정

1. “대학원생 확보 실적” 부분의 점수는 최근 1년간 참여 교수별 학기당 평균 대학원생 수(일반대학원 full-time에 한하며, 대학기 등록 인원 기준)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 “대학원생 배출 실적” 부분의 점수는 평가대상 직전연도 8월 및 평가대상연도 2월의 참여 교수별 대학원생 배출 수(일반대학원 full-time에 한하며, 석사 및 박사 졸업자로 집계함)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3.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IF합”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지도 대학원생 1인당 IF합에 따라 대해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단, 연구재단 SCI 인정 학회 논문은 SCI급 논문으로 간주한다.

4. “최근 1년간 지도 대학원생 1인당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환산 편수”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지도 대학원생 1인당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환산 편수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5. “지도학생 영어작성 학위논문수” 부분은 최근 1년간 교수별 지도 대학원생(일반 대학원의 full-time 학생에 한하며, 학생의 졸업일 기준으로 집계함)이 작성한 영어 학위 논문 총수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6.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부분은 최근 1년간 국제학회에서 program committee member, 수상, 기초강연 횟수와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횟수의 합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7. “국제 공동 연구 실적수”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국제 공동 연구 실적수의 합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8.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수”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수의 합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9.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 1년간 교수별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10. “참여 교수 1인당 IF합”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환산 논문 편수와 논문들의 IF를 합하여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11.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1인당 연평균 특허 등록 환산 건수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BK21 플러스 사업의 국가별 가중치를 반영한다.

12.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1인당 연평균 기술이전 실적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13. “참여교수 1인당 산업체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부분은 BK Plus 사업의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 1년간 교수별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에 따라 부칙의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14. “기타 연구 기여도(사업단장 평가)” 점수는 사업단장이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

15. 해당 연도의 참여교수별 총점은 각 항목 산출 점수에 제 3 조에서 정한 정규화 비율을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 5 조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

1. 사업운영 경비 인센티브 연구비 예산의 75%를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제 4 조에서 정한 총점이 60점 이상인 참여교수에 한하여 가용 예산의 70%를 동일하게 지급한다.

3. 나머지 가용 예산의 30%는 총점에 따라 참여교수들의 등수를 정한 후, 중간 등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그룹(짝수일 경우 중간 등수 포함, 홀수일 경우 중간 등수 제외)의 참여교수들에게 60%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하위 그룹의 교수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 6 조 연구보조원 및 신진 연구인력 연구업적

연구보조원 및 신진 연구인력(이하 보조 인력)의 연구업적 인정기간은 평가대상연도의 1년간(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 국제저명학술지(SCI(E)) 논문 편수
- 국내저명학술지(학진등재) 논문 편수
-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편수
- 국내학술대회 발표 논문 편수
- 국제특허 등록 및 출원 횟수
- 국내특허 등록 및 출원 횟수

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비 처리 완성도 (사업단장 평가)', '행정 처리 완성도 (사업단장 평가)', '근무/근태 성실도 (사업단장 평가)', '기타 사업 기여도 (사업단장 평가)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연구업적 평가 및 증빙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식자료에 기반을 둔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업적에 대하여 사업단장이 보조 인력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보조원 및 신진 연구인력 연구업적 인정 기준 및 점수 산정

1. 각 업적의 경우 사업단 참여 보조 인력이 다수가 참여하였을 경우 주 저자 또는 주 발명인에 해당하는 1인에게만 실적을 인정한다.
2. 연구 업적 총 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편수/횟수에 건당 점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다.

	국제저명 학술지	국내저명 학술지	국제학술 대회 논문	국내학술 대회 논문	국제특허 등록	국제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국내특허 출원
점 수	300	200	150	75	300	50	200	30

3. 행정연구원은 '연구비 처리 완성도 (총 25점. 사업단장 평가)', '행정 처리 완성도 (총 25점. 사업단장 평가)', '근무/근태 성실도 (총 25점. 사업단장 평가)', '기타 사업 기여도 (총 25점. 사업단장 평가)로 점수를 산정한다.

제 8 조 연구보조원 및 신진 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1. 사업운영 경비 인센티브 연구비 예산의 25%를 보조 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는 보조 인력들에 한하여 상, 중, 하 그룹으로 20%,

30%, 50% 비율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하여 가용 인센티브 예산을 50%, 30%, 20% 비율로 할당한다. 할당된 그룹 지분에 대하여 그룹에 속한 학생 수로 정규화한 액수를 산정하여 각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때 동일 점수인 경우, 국제 SCI 논문, 국제학술대회, 국내 학술지 논문, 국내 학술대회 논문의 업적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3. 만약 100점 이상이 되는 보조원이 없는 경우 또는 상, 중, 하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경비 인센티브 연구비 예산의 참여 연구 보조원에 대한 지분을 사업단장이 보조원들의 업적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매년 정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한다.

제 9 조 연구업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시기

1. 참여교수의 경우 해당 연도 사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연구업적을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참여교수별 인센티브 지급을 종료 시점 이전에 마친다.

2. 연구보조원 및 신진 연구인력의 경우 해당 연도 사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연구업적을 평가한 후, 그에 따른 보조 인력별 인센티브 지급을 종료 시점 이전에 마친다.

제 10 조 기타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부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내용은 사업단장 발의 하에 전체 참여교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개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차년도 규정에 반영토록 한다.